
하이탑실버케어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내부관리계획

2026년 5월 1일



하이탑 실버케어

하이탑실버케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)내부 관리계획

1. 설치목적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 33 조의 2 및 제 33 조의 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관련 규정을 구체화 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2.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

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 (이하 '책임자'라 한다.) 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.

1) CCTV 설치·운영 관리책임자

가. 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: 시설장 박수영

나. 운영담당자 : 사무국장 박지수

다. 모니터링 담당자 : 관리인, 야간근무자 특정

2) 제 1 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,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,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.

①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.

3. 카메라 대수 · 위치 · 성능 및 촬영범위

1) 대수 : 78 대

2) 위치 :

B1 층	5 대 (엘리베이터앞/조리실/복도)	1 층	10 대 (주차장/복도/사무실/물리치료실/특별실/엘리베이터앞)
2 층	13 대 (엘리베이터앞/침실/복도/프로그램실)	3 층	13 대 (엘리베이터앞/침실/복도/프로그램실)
4 층	13 대 (엘리베이터앞/침실/복도/프로그램실)	5 층	13 대 (엘리베이터앞/침실/복도/프로그램실)
6 층	11 대 (엘리베이터앞/침실/복도/프로그램실/외부)		

3) 성능 : HD 급(200 만 화소)

4) 촬영범위 : 현관, 엘리베이터, 각층의 복도/프로그램실/침실, 조리실, 물리치료실, 사무실
주차장, 특별실, 외부테라스

4.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: 가로 30cm X 세로 21cm / 현관출입구, 게시판

5. 촬영시간 : 24 시간 상시 촬영

6. 영상정보 보관기간 : 60 일

7.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책임자실에 있는 DVR

8. 영상정보 열람 장소 : 1 층 사무실

9. 영상정보 삭제주기 : 60 일 경과 시 자동 삭제

10.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

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1)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 • 신체 •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목적으로 열람 시기•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2)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 • 절차 및 방법 등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- 3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「노인복지법」제 39 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
- 4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5) 그밖에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•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

11. 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제출서류

- 1)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는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.

- 2)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는 열람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
- 3)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 - ①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
 - ② 천재지변,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,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
 - ③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
- 4)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• 관리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,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- 5) 제 1 항부터 제 4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

12. 운영자의 금지 행위

- 1)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2)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
- 3)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
- 4)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정보로 접근, 영상자료를 열람 • 모니터링하는 행위
- 5) 종사자의 노동감시, 사생활감시 등을 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행위